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28 선고 2024가합48440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고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천

담당변호사 김관유, 이승준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송은희

변론 종결 2024. 11. 7.

판결 선고 2024. 11. 2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20,000,000원, 원고 B에게 390,000,000원, 원고 C에게 170,000,000원, 원고 D에게 170,000,000원, 원고 E에게 100,000,000원, 원고 F에게 100,000,000원, 원고 G에게 50,000,000원, 원고 H에게 63,44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6. 26.부터 2021. 6. 26.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8%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9. 6. 26. J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게 아래 각 금원을 이자율 연 10%, 지체이자율 연 18%, 변제기는 대여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1	A	220,000,000
2	B	390,000,000
3	C	170,000,000
4	D	170,000,000
5	E	100,000,000
6	F	100,000,000
7	G	50,000,000
8	H	63,440,000
합계	1,263,440,000	

원고들과 이 사건 회사가 위 대여금에 관하여 각 원고별로 해당 원고를 대주, 이 사건 회사를 차주로 하여 작성한 각 차용증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차용증서'라 한다)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차주인 이 사건 회사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제3조 보증책임 등

I(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는 본 계약에 따라 차주(이 사건 회사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하여 보증한다. 차주의 대표이사는 차주를 대리하여 I로부터 별도의 합의를 통해 위 보증 채무를 확보한다.

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피고는 2019. 6. 24. 이 사건 회사, K과 사이에 주주간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주주간계약서'라 한다), 이 사건 주주간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전문

1. 최대주주(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는 본 계약 체결일 현재 대상회사(K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의 발행주식 1,200,000주 중 840,000주(지분율 70%)를 보유하고 있다.
2. 투자자(이 사건 회사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는 2019년 6월 24.일 대상회사의 발행주식 1,200,000주 중 360,000주(지분율 30%, 이하 "본건 보통주")를 보유한 L으로부터 본건 보통주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3. 당사자들은, 본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회사의 운영 및 각 당사자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 이에 당사자들은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제14조 담보의 제공 등

- (1) 최대주주는 본 계약에 따라 투자자가 취득하는 제7조 투자자의 매수청구권, 제11조 손해배상 등에 대한 담보로써 최대주주가 보유한 대상회사 보통주 [360,000]주(이하 "담보제공주식")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여 준다.
- (2) 투자자가 본건 보통주를 취득하기 위해 제3자(이하 "대여자")로부터 금전을 차입한 경우, 최대주주는 대여자에게 투자자가 부담하는 금전 채무를 연대하여 보증하고 이를 변제하기로 확약한다. 이를 담보하기 위해 담보제공주식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여 준다. 이때 최대주주가 부담하는 금전 채무액은 원금 및 이에 대한 연 10%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변제기를 초과할 경우에는 원금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지연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6조 기타 사항

(1) 특약사항

최대주주와 투자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별도의 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주주간계약서 작성일과 같은 날 이 사건 회사, M, H와 사이에 주주간계약(특약)을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이 사건 특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최대주주(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보유분 매수 대금 관련

투자자(이 사건 회사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는 최대주주 보유분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을 차입하고, 최대주주는 위 차입금 지급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하고, 보유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다. 위 차입조건을 보면, 투자자는 만기 1년, 이자 연 10%의 조건으로 금전을 차입하되, 투자자 보유분의 매각으로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대여원금에 중도상환이자 10%를 가산하여 일시 상환한다. 투자자가 차입금 상환 등을 지체할 경우 지체이자율 18%의 적용을 받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회사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차용증서에 따라 대여금 채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피고는 주채무자인 이 사건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차용증서상의 의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채권자인 원고들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으로서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보증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려면 당연히 그 전제로서 보증인의 보증의사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보증의사의 존부는 당사자가 거래에 관여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관여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당사자의 의사해석과 사실인정의 문제이지만, 보증은 이를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증의사의 존재나 보증범위는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39923 판결,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3413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법리와 인정사실에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차용증서에 따른 차용금채무에 관한 연대보증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그와 같은 의사의 합치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주주간계약서는 제14조 제2항에서 '이 사건 회사가 본건 보통주를 취득하기 위해 제3자(이하 "대여자")로부터 금전을 차입한 경우, 피고는 대여자에게 이 사건 회사가 부담하는 금전 채무를 연대하여 보증하고 이를 변제하기로 확약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주주간계약과 같은 날 체결된 이 사건 특약 제2조에서도 '이 사건 회사는 피고 보유분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을 차입하고, 피고는 위 차입금 지급 채무에 대해 연대 보증하고, 보유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주주간계약서와 특약 작성 이후인 2019. 6. 26.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각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각 차용증서 제3조는 '보증책임'이라는 표제 하에 '피고는 본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하여 보증한다.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 사건 회사를 대리하여 피고로부터 별도의 합의를 통해 위 보증 채무를 확보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차용증서 작성 이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피고와 보증채무 이행에 관하여 별도로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처럼 피고가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주주간계약서 및 특약을 통하여 향후 이 사건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실제로 피고와 원고들이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② 이 사건 주주간계약과 이 사건 특약에는 이 사건 회사가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전을 차용하고, 피고가 이를 연대하여 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보증계약의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채권자와 보증인이고, 주채무자는 보증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보증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채권자가 아닌 주채무자와 사이에 주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어떠한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증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주간계약서 제14조 제2항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회사가 부담하는 금전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확약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해 담보제공주식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여 준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실제로 K 보통주 36만주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 사건 주주간계약서 별지에 '질권 설정 동의 및 승낙서'를 작성한 점을 들어 연대보증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질권은 이 사건 주주간계약서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매수청구권, 손해배상채권 등에 대한 담보로서 설정하였다고 볼 수도 있는 점, 오히려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질권 설정 동의 및 승낙서'를 별도로 작성한 반면, 연대보증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분문서가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연대보증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상우

판사장보순

판사강소혜